

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

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운항규칙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구간으로 지정고시 하오니, 10노트 이하 저속 운항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6. 18

부산해양경찰서장

□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구역

1. 구 역

수영강 1호교 ~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

※경계해점 : 35-09-06N 129-08-04E

2. 시행일 : 2015.8.1부터 연중

3. 대 상 :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개인레저활동(경찰·관공선, 구조선 제외)

4. 사 유

-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 방해 및 충돌사고 예방
- 나잡어업 등 어업활동시 사고 위험 감소
-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

5. 별 칙

- 100만원 이하 과태료(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)

6. 지정도면 :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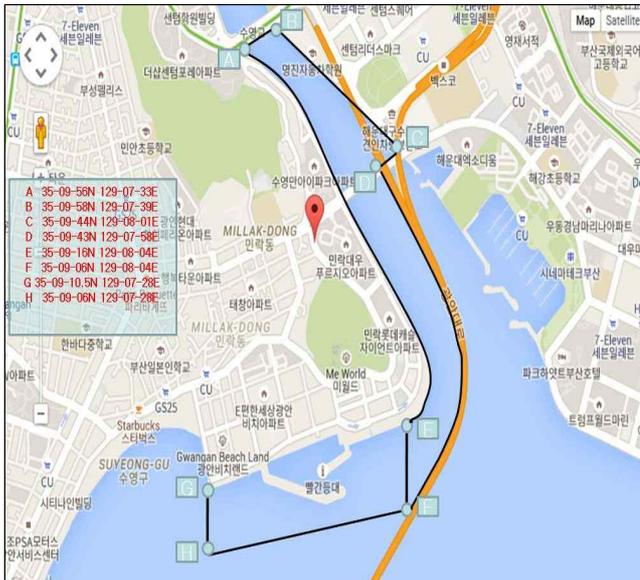
○ 재검토 기한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『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시범구역 지정』 고시(부산해양경비안전서 제2015-26호)는 폐지한다.

[별첨]

○ 수영강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도면



※ E, F, G, H 해점 이내 해역 :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